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44호 2022. 1. 6.(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488호)
-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예천군 조례 제2489호)
-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예천군 조례 제2490호)
-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491호)
- 예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492호)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93호)

공 고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예천군 공고 제2022-26호)
-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예천군 공고 제2022-27호)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 수 공표(예천군 공고 제2022-2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88호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대 서명한 주민의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에 게재하고 군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함께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정
조례의 [] 개정 청구서
[] 폐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신청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청구인명부의 표지)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예천군 읍·면(○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 방법

- "괄호()"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첨부합니다.
-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청구인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제1조)
- 나.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제2조)
- 다.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제3조)
- 라. 주민의 조례청구에 관한 각종 서식 규정(제4조~제7조, 제10조)
- 마.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 방법(제8조 및 제9조)
- 바.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제10조)
- 사.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한 군수의 협조(제12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89호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예천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나 방호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가 종료되는 날 또는 그 다음 날의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효율적인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예천군과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휴가 등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재해·재난·대규모 행사·산불비상근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포상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 중의 휴가일수는 최장 30일(휴가일수는 5일 이상 10일 이내로 분할할 수 있으며,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③ 의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입영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
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의회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의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 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2조 ~ 제5조)
- 나.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제6조 ~ 제8조)
- 다.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제9조 ~ 제11조)
- 라.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제12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90호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예천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 여비 지급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의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여비 지급 기준 및 운임·숙박비 규정(제2조 ~ 제3조)
- 나. 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 징수(제4조)
- 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제5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91호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예천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예천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 등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로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 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후생복지 사업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남·여휴게실
2.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모성 보호 및 자녀 보육을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
4.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숙소 보증금 지원
 4. 국내·외 체험 연수 지원
 5.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6.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지급
 7.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단합대회 운영 지원
 9. 경조사에 대한 물품 등의 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선택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 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기금 등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예천군 소속 공무원 중 행정·보건·후생복지 분야 등과 관련 있는 업무 관계자

2. 지역 주민 중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7조(예천군과 통합 운영) 의장은 예천군수와 상호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6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의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 적용 범위(제3조)

○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휴직 공무원,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적용 배제

나.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의 운영과 시행(제5조 및 제6조)

다. 필요시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의 운영 위탁(제7조)

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점수·사용한도·부여기준 및 관리 등
(제8조 ~ 제15조)

마.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6조)

바.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제17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92호

예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예천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새로 임용되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 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의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원의 적용범위(제3조)

-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정직·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은 지원 배제

나. 지원 원칙 및 계획수립(제4조)

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제5조)

-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이동편의 시설 보강 등
- 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8조)

예천군의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반영을 위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93호

지 방 자 치 법 전 부 개 정 에 따 른 인 용 조 문 등 반 영 을 위 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를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부터 제86조”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을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지방의회”를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를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 하여 지방의회”를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로,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별표 제1호”를 “별지”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예천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의회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의회의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이후 지방의회의”를 “이후”로, “지방의회에”를 “의회에”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별표 제2호”를 “별표”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1호를 별지 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여 비	예천군의회회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 국내여비정액표의 의원에 대한 여비 상 당액

[별지 서식]

위 축 장

예천군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의 회 의 장

①인

제2조(「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를 “예천군의회 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의 징계와 자격”을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의장”을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회의규칙”을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3조(「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회”를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을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으로,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한다.

①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44조에 따른 예비비 지출의 승인과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임시회의 소집) 법 제54조3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의회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4조(「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로,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를 “예천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는 군”을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감사를”을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회의장”을 “예천군의회의장”으로, “군수”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04조 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예천군이”를 “군이”로, “예천군의”를 “군의”로 한다.

3. 군이 설치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제6조제1항제1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선 서 (기관장)

본인은 예천군의회○○○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 :

①인

제5조(「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제6조(「예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을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원”으로,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회의원”을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의장”을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공무수행”을 “공무출장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 활동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안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의회 의원”을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의회의원”을 “도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상해, 질병”을 “상해·질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 제2호”를 “이내, 제2호”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천군에”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회의원”을 “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무직공무원”을 “의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의원”을 “의원”으로 한다.

2. 군 소속 실·과·소장 1명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예천군”을 “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 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 상 금 수 령 금 용 기 관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 연 월 일	병 일 시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예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붙임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 경위서 1통, 사망 진단서 1통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상병 경위서 1통, 장애진단서 1통,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통(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 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의회 의장 직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 상 대 상 의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장애· 상 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 사 내 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예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직인 예천군수 귀하					

제7조(「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원”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원”을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예천군”을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

제8조 중 “예천군”을 “의회 소속”으로 한다.

제8조(「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를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의”를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9조(「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8조에 따른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예천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을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를 “남용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견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③ 의장은 견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견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견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견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견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예천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발견
2.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발견
3. 의원이 군 또는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4. 의원이 군과 계약 체결
5. 법 제44조 위반
6.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징계기준 (제7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4조제6항 관련)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 모욕, 폭언, 갑질 등 기타 품위손상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5.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6.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7. 회의무단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별지 제1호서식]

연번	검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예천군의회 의원 검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검 직 내 용	기관·단체명					
	직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의회 의원 (인) 예천군의회 의장 귀하						

예천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명							
		본인 관련자명			본인, 직계존·비속명				
		배우자 관련자명	유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명				
			-						
연번	관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
의2 및 「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의회 의원 (인)

예천군의회 의장 귀하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시행 '22. 1. 13.)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이 포함된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의 조례를 일괄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인용 조문의 변경(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및 자구 수정

나. 「예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 인용 조문의 변경(지방자치법 제71조 등)
-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근거 마련

다.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명의 변경(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인용 조문의 변경(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 등)
- 임시회의 소집 정족수 규정(군수의 요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요구 시 15일 이내 소집)
- 의안 발의 정족수 규정(군수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

라.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인용 조문의 변경(지방자치법 제117조 등)

마.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인용 조문의 변경(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바. 「예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명의 변경(예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 활동 보상 근거 마련

사.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명의 변경(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인용 조문의 변경(지방자치법 제40조)

아.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의 개정

- 제명의 변경(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인용 조문의 변경(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마련(지방자치법 제41조)

자. 「예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제명의 변경(예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인용 조문의 변경(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 등)
- 겸직신고 안내·점검·공개 등 규정(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및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의결)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의 신고(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의결)
- 징계 규정 마련(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의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에 의거 2022년도 예천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6일

예 천 군 수

(단위:명)

기관명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서명하여야 할 19세이상 주민수
	계	19세이상 주 민 수	19세이상 외국인*	
예천군	47,228	47,201	27	6,747

※ 19세 이상 외국인 : 2021.12.31.현재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이상의 외국인

※ 서명하여야할 주민수 : 전체 투표 청구권자의 1/7이상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022년도 예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와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6일

예 천 군 수

■ 2022.1.12.(수)까지 적용

(단위:명)

기관명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연서하여야 할 19세이상 주민수
	계	19세이상 주민수	19세이상 외국인	
예천군	47,225	47,201	24	945

■ 2022.1.13.(목)부터 적용

(단위:명)

기관명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연서하여야 할 18세이상 주민수
	계	18세이상 주민수	18세이상 외국인	
예천군	47,627	47,603	24	953

※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 :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2022년도 예천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월 6일

예 천 군 수

□ 군수(자치단체장)

(단위:명)

읍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비고
		최소기준	15/100 산정수	
계	47,225		7,084	3분의 1이상 읍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예천읍	12,792	473		
용문면	2,116	318		
효자면	1,091	164		
은풍면	1,274	192		
감천면	2,489	374		
보문면	1,570	236		
호명면	14,370	473		
유천면	2,289	344		
용궁면	2,270	341		
개포면	1,451	218		
지보면	2,583	388		
풍양면	2,930	440		

☞ 기준일 : 2020. 12. 31. 현재

□지방의회의원(군의원)

(단위:명)

선거구	읍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비고
			최소 기준	20/100 산정수	
합계		47,225			
가 선거구	계	12,792		2,559	
	예천읍	12,792			
나 선거구	계	6,424		1,285	2개 이상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효자	1,091	65		
	은풍	1,274	65		
	감천	2,489	65		
	보문	1,570	65		
다 선거구	계	19,883		3,977	1개 이상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호명	14,370	199		
	지보	2,583	199		
	풍양	2,930	199		
라 선거구	계	8,126		1,626	2개 이상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유천	2,289	82		
	용궁	2,270	82		
	개포	1,451	82		
	용문	2,116	82		

☞ 기준일 : 2021. 12. 31. 현재